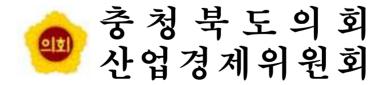


심사보고서

○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2 2018. 7. 20.(금) 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8년 7월 3일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7월 9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7월 11일

(제3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-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맹경재)
 - 가. 제안이유
 - 저출산·고령화, 베이비부머 효과 등으로 중장년 세대 급증에 따른 중장 년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
 - ※ 충북의 중장년 ⇨ 전체 인구의 32.7%, 생산가능인구의 46.2%
 - ▶ '18. 2월말 기준 : 522,621명 (40~49세 : 254,826명, 50~59세 267,795명)
 - 나. 주요내용
 - 일자리창출 사업에 중장년 대상 사업 포함 (안 제5조)

- 3. 검토보고 요지(산업경제전문위원 : 오문석)
- '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저출산·고령화, 베이비부머 효과 등으로 중장년 세대 급증에 따른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- 다만, 기존 '청년층'에서 '청년·중장년'으로 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요 되는 예산 등의 문제는 없는지 관련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"없 음"
- 5. 토 론 요 지: "없음"
- 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- 7. 소수 의견 요지 : "없 음"
- 8. 기타 필요한 사항: "없 음"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- O「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호 중 "청년층 등 생산적·경제적 일자리 창출사업"을 "청년·중장년 등 생산적·경제적 일자리 창출사업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일자리 창출 사업) 도지사는	제5조(일자리 창출 사업) 도지사는
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	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
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	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
다.	다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청년층</u> 등 생산적·경제적 일자	2. <u>청년·중장년</u> 등 생산적·경제적
리 창출사업	일자리 창출사업